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00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강경숙 · 김재원 · 김선민
차규근 · 서왕진 · 김준형
신장식 · 황운하 · 문정복
백승아 · 진선미 · 김문수
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미래의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 다.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강사, 전문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육기관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겸임교원 또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등으로 그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인공지능의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의 원리·영향·윤리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 나. 인공지능의 활용·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다. 인공지능의 역기능·부작용에 관한 교육
 - 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 등의 활동
3. “인공지능교육산업”이란 인공지능교육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제3조(기본이념) ① 인공지능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공지능교육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공지능교육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기관 및 인공지능교육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에서의 인공지능교육의 기본 방향
2. 인공지능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3. 인공지능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4. 인공지능교육의 내용, 교수인력 및 인공지능교육산업 등 윤리적 책임 확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분야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7. 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과의 협력 방안
8. 그 밖에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인공지능교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 등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력의 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 및 강사
2. 인공지능을 활용·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

3.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교육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4. 그 밖에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② 제2조제4호다목의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다른 교육기관·연수기관·연구기관 및 기업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연수기관·연구기관 및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원 등 임용의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의 교육기관에서 겸임교원 또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인공지능교육 윤리)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하 이 조에서 “윤리규범”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과 인공지능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교육분야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과 인공지능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 4호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영향평가의 범위·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인공지능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